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0. . .
발 의 자	홍난이 의원 외 7명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홍난이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0. . .

발 의 자 : 홍난이·김낙관·송용자·안장환·안주찬
이선우·이지연·장미경 의원(8명)

1. 제안이유

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,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추가 신설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,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만 65세 이상의 사람”을 “사람”으로,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지급순위에 따라”를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만 65세 이상)
 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

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

2. 「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

③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시 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 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 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 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 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3조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한다.	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--- ----- ----- 사람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.
1.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 격자로 통보된 사람	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(만 65세 이상)
2. 「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참전명예 수당 지급대상자	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② 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한다.

<신 설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

2. 「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참전명예 수당을 받는 사람

③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
·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
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
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
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
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
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- 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
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1. 순국선열 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
순국선열
 2. 애국지사 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
애국지사

3. 전몰군경(戰歿軍警) 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4. 전상군경(戰傷軍警) 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5. 순직군경(殉職軍警) 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6. 공상군경(公傷軍警) 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7. 무공수훈자(武功受勳者) : 무공훈장(武功勳章)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
8. 보국수훈자(保國受勳者)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가.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
- 나.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"간첩체포등의 사유"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9.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(在日學徒義勇軍人)(이하 "재일학도의용군인"이라 한다) :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(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)
10. 참전유공자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가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- 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11. 4·19혁명사망자 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
12. 4·19혁명부상자 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13. 4·19혁명공로자 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(建國褒章)을 받은 사람

14. 순직공무원 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
15. 공상공무원 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16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(이하 "특별공로순직자"라 한다) 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

17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(이하 "특별공로상이자"라 한다) 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

18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(이하 "특별공로자"라 한다) :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
□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 (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)
2. 특수임무부상자 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3. 특수임무공로자 :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 신설함에 따라 세출 발생(안 제8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세출
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.

-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내 용	산출내역	금액
합 계		9,000
보훈예우수당 추가 지급	50,000원×15명×12월	9,000

※ 보훈예우수당 : 월 50,000원

※ 추가지급대상자 : 만 65세 이상 1명, 만 65세 미만 14명

4. 작성자

-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최병기(480-5102)